



# IMO News Brief

## HTW 11



제11차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기준 전문위원회 (이하 “HTW”)가 2025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하이브리드 회의로 개최됨.  
동 News Flash는 HTW 11 주요 사안의 논의결과를 브리핑함.

### 1.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1978 STCW 협약)의 전면 개정 [의제 6]

HTW 11는 1978 STCW 협약의 전면 개정작업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본 개정 작업은 두 개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

- Phase 1: 검토 단계 (2024 - 2025), 갭 분석을 통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
- Phase 2: 개정 단계, 식별된 갭분석에 따라 실질적인 협약 개정안 제안 및 논의

이번 회기에서는 1 단계 검토작업이 최종화되었으며, 2 단계 개정작업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500 건 이상의 갭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음. 2024년 10월에 개최된 바 있는 회기간 작업반 (ISWG-STCW 1)에 이어, 추가 문서가 제출되어 검토되었으며 금 회기에서는 아래 사항 등이 개정 단계로 포함되었음.

- 전자기관사 (Electro-Technical Officers, ETOs) 관리급 도입 필요성 (산업계 관련 기술발전을 고려)

한편 일부 회원국에서는 추가적인 교육 요구사항이 선원 및 해사 교육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이에 따라, 개정 로드맵의 각 단계에서 추가되는 요구사항의 누적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함.

STCW 협약 전면개정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26년 HTW 12 전문위원회부터 매2년마다 회기간 작업반(ISWG)을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관련 요청이 MSC 110차 및 Council 134차에 보고될 예정임.

체계적인 개정을 위한 작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개정작업은 STCW 협약의 핵심요소인 제2장(선장 및 항해사)과 제3장(기관사) 및 이에 상응하는 코드 조항부터 개시하도록 결정되었음.

개정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임.

- 협약 및 코드 제 2 장, 제 3 장 전반 및 제 1 장 (STCW Oversight 관련 조항에 한정);
- 협약 및 코드 제 4 장, 제 6 장 전반 및 제 1 장 (STCW Oversight 조항 외 나머지 조항); and
- 협약 및 코드 제 5 장, 제 7 장 및 제 8 장 전반

STCW 협약 개정 로드맵은 작업진행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Live Document로, 이번 회기에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정안 채택 목표 시점이 2032년으로 조정되었으며, 일부 회원국 및 NGO들은 개정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on Seafarer Medical Certificates]

HTW 11는 선원 건강진단서 및 선원 건강진단 담당 인정 의학의의 관련된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MSC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였음. HTW는 해당 결의안을 최종화하였으며, MSC 110차에서 승인될 예정임.

이 결의안은 회원국이 자국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원 건강진단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IMO GISIS 포털을 통해 의학의의 목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본 조치는 선원 건강진단서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2.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체연료 및 신기술에 대한 안전지침 프레임워크 개발 [Agenda 7]

HTW 11는 대체연료 및 신기술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 교육훈련을 위한 임시지침 개발을 개시하였음. 이번 회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병행하여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음.

- 대체연료 및 신기술에 적응 가능한 포괄적인 임시지침;
- 대체연료와 신기술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연료별/기술별 임시지침

상기 지침에서 다루게 될 대체연료와 신기술의 범위는 CCC 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미 안전 임시지침 등의 규정이 마련된 대체연료와 신기술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임.

이에 따라, 선원 교육훈련 임시지침 개발이 필요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음.

- 메틸/에틸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 LPG 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이번 회기에서는 STCW.7/Circ.23(가스 및 기타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 교육훈련을 위한 임시지침)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임시지침이 최종화되었음.

또한, 연료별 임시지침은 각각의 대체연료 및 신기술에 대해 개별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모든 임시지침에는 지식, 이해 및 숙련도 (KUP) 표가 포함될 예정이고 동 사항은 STCW.7 Circular 형태로 발행될 예정임.

한편, 여러 연료 및 기술별 임시지침이 개발 예정임에 따라 선원들에게 과도한 교육훈련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요소들은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임시지침을 향후 강제규정화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할 예정임.

## [Draft Circular on Interim Generic Guidelines on Training for Seafarers on Ships Using Alternative Fuels]

포괄적인 교육훈련 지침이 최종화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체연료 및 신기술을 사용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친숙화 요구사항
- 대체연료 및 신기술을 사용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기초교육 요구사항

- 대체연료 및 신기술을 사용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상급교육 요구사항
- 대체연료 및 신기술을 사용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기초/상급교육을 위한 역량기준
- 대체연료 및 신기술을 사용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정기적인 비상대응 훈련

상기 최종화된 STCW.7 Circular 는 MSC 110 차에서 승인될 예정임.

#### [Draft interim guidelines on training for seafarers on ships using methyl/ethyl alcohol as fuel]

메틸/에틸 알코올은 선원 교육훈련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연료로 합의됨에 따라,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 교육훈련을 위한 임시지침 개발이 이번 회기에서 개시되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완성되지 못하였음.

상기 지침은 다음을 고려하여 개발될 예정임.

- MSC.1/Circ.1621(메틸/에틸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임시 안전지침)
- HTW 11 에 상기와 관련하여 제출된 관련 문서

또한 KUP 표는 기존 IGF Code 의 기초/상급교육 요구사항과 메틸/에틸 알코올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갱분석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논의는 회기간 실무작업반(CG)를 통해 진행 예정에 있음.

#### [Draft interim guidelines for the training of seafarers using other fuels and technologies]

우선순위가 높은 대체연료 및 신기술에 대한 임시지침 개발 작업은 회기간 실무작업반(CG)의 작업범위(ToR)에 포함되었으며, 해당 결과보고서가 2026 년 HTW 12 전문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임.

### 3. 모델코스의 유효화 [Agenda 3]

HTW 11 은 모델코스 개발, 검토 및 유효화를 위한 지침 초안을 최종화하였으며, 이는 MSC 110 차 및 MEPC 83 차에서 승인될 예정임.

또한, 이번 회기에서 다섯 건의 개정된 모델코스가 유효화 되었으며 그 상세는 다음과 같음.

- Revised Model Course 3.20 on Company Security Officer (CSO)
- Revised Model Course 3.21 on Port Facility Security Officer (PFSO)
- Revised Model Course 3.22 on Actions to be Taken to Prevent Acts of Piracy and Armed Robbery
- Revised Model Course 1.25 on General Operator's Certificate for the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Revised Model Course 1.26 on Restricted Operator's Certificate for the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4. 선원 자격증명서의 불법적 허위 사용에 관한 보고 [Agenda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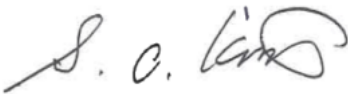
HTW 11 에서는 다수의 회원국들이 선원 자격증명서와 관련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바 있음.

- 현행의 IMO 규정의 철저한 적용
- 디지털 수단의 도입 및 활용

- 회원국 간 협력 강화
- 회원국 차원의 절차, 담당기관 연락처, 관련 등록부의 접근성 관련 투명성 제고

또한 회원국 및 사업장 차원에서, 선원을 고용하거나 승무자격증 발급 전에 선원의 자격서류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이 강조되었음.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협약심사팀장

담당자: 박시현 책임검사원  
Tel: +82 70 8799 8345  
E-mail: conaudit@krs.co.kr

####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